

용인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-64호

- 2026년 제4·6·7회(재공고) -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

2026년 제4·6·7회(재공고)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.

2026년 9월 23일

용인시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시험계획

○ 채용분야 및 인원

회차	채용분야 [근무부서]	직급	선발 인원	근무기간 (週근무시간)	직무내용
'26년 4회 재공고	관 리 의 사 [수지구보건소 보 건 행 정 과]	지방의무사무관 (일 반 임 기 제)	1명	1년 (주40시간)	- 만성질환 등 1차 진료 및 상담 - 각종 건강진단 결과 판정 - 보건소 예방접종 예진 - 감염병 예방·관리 업무 -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업무
'26년 6회 재공고	운 동 처 방 사 [수지구보건소 건 강 증 진 과]	지방시간선택제 임 기 제 마 급	1명	1년 (주35시간)	- 통합건강증진사업(신체활동) 운영 - 모바일 헬스케어(운동) 상담 및 콘텐츠 제공 - 고혈압·당뇨 표준화사업 운동 교육 - 모바일 걷기 플랫폼 운영 - 체성분 측정 및 상담 - 건강증진팀 업무 지원
'26년 7회 재공고	통 역 · 관 광 안 내 [문화체육관광국 관 광 과]	지방시간선택제 임 기 제 마 급	1명	1년 (주35시간)	- 관광안내소에서 용인관광 홍보 및 안내 - 국내·외 관광객에게 관광안내 및 통역(중국어) - 관광안내소 정비 및 운영 - 주요 관광홈페이지 홍보내역 관리 등 - 기타 관광홍보 및 보조 - 필요시 각종 회의, 행사 통역 지원

※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.

2. 응시자격

○ 공통요건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 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 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제3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1. 공공기관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-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.

1.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: 퇴직일
2.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)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3.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4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된 날 또는 사면,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
5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6.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

- 주소지 : 제한없음

○ 응시연령

응시연령	해당 생년월일	채용분야
18세 이상	2008.12.31. 이전 출생자	관리의사, 운동처방사, 통역·관광안내

○ 자격기준(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함)

직무분야	자격기준
관 리 의 사 [수지구보건소 보건 행정 과] *지방의무사무관 (일반임기제)	다음 각 호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춘 자 1.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○ 필수 자격요건 : 「의료법」 제2조에 따른 의사 면허 소지자 ○ 관련분야(경력) :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및 「의료법」 제3조에서 정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의사 분야 실무 경력
운 동 처 방 사 [수지구보건소 건강 증 진 과] *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 급	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○ 필수 자격요건 :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 및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○ 직무분야(경력) :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및 민간(법인체 및 대학 부설연구기관, 의료기관 포함)에서 신체활동, 운동처방, 보건교육 관련 분야 실무 경력
통 역·관 광 안 내 [문화체육관광국 관 광 과] *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 급	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○ 필수 자격요건 : 2년 이내 아래의 공인 어학 점수를 한 개 이상 보유한 자 - HSK 5급 이상, FLEX 776점 이상, BCT(B) 181점 이상, BCT(B)L&R 601점 이상 - CPT 750점 이상, TOCFL 5급 이상 ○ 직무분야(경력) :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통역(중국어) 관련 실무 경력

- ※ **경력증명서에 관련분야 경력이 기재되어야 함.**
- ※ 경력은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**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.(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)**
 - ⇒ 관련근거: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제17조제5항
- ※ 경력기간은 **주 40시간 근무기준**(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, 시간 비례 계산)
- ※ 「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」 및 「용인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」 별표5의3에 따라 일반(시간선택제)임기제공무원의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.
- ※ 경력요건의 경력 계산 시, **공무원 경력과 민간 경력은 합산되지 않음**

3. 시험방법

○ 1차 시험 : 서류전형

- 채용예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·경력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

○ 2차 시험 : 면접시험

-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구술에 의한 문답식으로 검정
- 평정항목 (5개 항목)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44조
 - ⇒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
- **합격자 결정** :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- **추가합격자 결정** :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- **불합격 기준** :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"하"로 평정 또는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"하"로 평정
- **면접결과 공개** : 본인에 한하여 정보공개 청구 시 **개인별 상·중·하 개수** 공개

4. 채용일정 및 원서접수

○ 채용일정

모집공고	원서접수	서류전형 (합격자발표)	면접시험	최종합격자 발표
'26. 9. 23.(수) ~ 10. 7.(수)	'26. 10. 2.(금) ~ 10. 7.(수)	'26. 10. 16.(금) 전·후	'26. 10. 22.(목) 전·후	'26. 10. 28.(수) 전·후
◦ 시험일정 및 합격자는 개별 통지하지 않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 ⇒ 공고 확인 : 용인시청 홈페이지(www.yongin.go.kr) 채용/시험정보란 ◦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◦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및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				

○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(인터넷접수 불가, 대리접수 가능)

※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**접수사실을 반드시 담당자(☎031-6193-2113)에게 전화로 고지하여야 함.**

○ 등기우편 접수

-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
 - ▶ 주소 : [우17019]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(삼가동) 용인시청 인사관리과
- 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
-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**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·동봉 (대한민국 '정부수입인지' 사용불가)**
- **우편통상환증서 구입시 '받을분' 칸을 공란으로 남겨놓을 것(기재하지 말 것)**
 - ※ 우편통상환은 금융업무로 우체국 마감시간(16:30 등) 유의
- 우편봉투 겉면에 '2026년 제()회 용인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재공고 응시원서' 표기
- 우편접수 시 응시표는 서류전형 전까지 이메일로 회신 예정 ※ 이메일주소 반드시 기재 요망
- 우편접수 시 기재 서류 미비 등에 대하여는 응시자 본인 책임임.

○ 방문접수

- 접수장소 : 용인시청 인사관리과(시청 5층)
 - ※ 용인시청(1층) 민원여권과에서 응시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 제출
- 접수시간 : 평일 09:00~18:00 ※ 토·일요일·공휴일 및 점심시간(12:00~13:00) 제외
 - ※ **접수마감일 18:00 이후에는 원서접수를 할 수 없음.**

5. 제출서류 ※스테이플러 사용 및 양면인쇄 금지

① 응시원서 1부(붙임1/필수)

- 응시수수료(용인시 수입증지)
 - ※ 5급(가급) 이상 : 1만원 / 6~7급(나~다급) : 7천원 / 8~9급(라~마급) : 5천원
- 수입증지 판매처 : 용인시청 1층 민원여권과
-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 면제(증빙서류 첨부)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3.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
4.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

② 이력서 1부(붙임2/필수)

-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함
⇒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경력은 기재 금지

③ 자기소개서 1부(붙임3/필수)

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(붙임4/필수)

⑤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(붙임5/필수)

⑥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(붙임6/필수)

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공·이용동의서 각 1부(붙임7/필수)

⑧ 최종학교 졸업(학위)증명서 1부(필수)

- 석사 이상 졸업자의 경우 학사 이상의 증명서 모두 제출
- 고등학교 졸업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
- (붙임8)의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는 공고문의 응시자격 기준 전공학과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(해당자에 한함)

⑨ 경력(재직)증명서 (붙임9/필수)

-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 상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.

-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 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,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.

(주의사항)

- 근무기간, **담당업무, 주당 근무시간,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** 반드시 기재
- 경력증명서 발급 서식에 **주당 근무시간, 발급담당자 확인란이 없을 경우 발급담당자에게 수기로 확인받아 제출하거나 (붙임9)의 경력증명서 서식으로 제출**
-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관인 날인이 있어야 함.
- 국민연금, 고용·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서의 효력 불인정
-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 증명서 제출, 미제출 시 불인정
- 프리랜서,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,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
-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 제출

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(필수)

- [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발급 (<http://www.nhis.or.kr>) 또는 1577-1000번]
- 경력증명서상 근무경력 확인용이며,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
-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가능

⑪ 자격증 사본(필수자격인 경우, 해당자에 한함)

⑫ 각종 대회 수상, 상훈, 우대사항 등 증빙자료 1부(해당자에 한함)

- ※ 외국어로 기재된 증명자료(졸업증명서, 학력·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 한글 번역본을 제출
- ※ 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이 원칙이나 발급기관이 모호하거나 해외인 경우 원본 지참

6. 보수 및 기타사항

- 근무기간 :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및 사업지속 여부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함.
- 연 봉 :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에 의거 신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직급별 연봉하한액을 기준으로 책정함이 원칙이며,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협의 결정함.

채용분야	채용부서	채용직급	채용인원	약정기간	연봉액 (하한액 기준)	週당 근무시간
관 리 의 사	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	지방의무사무관 (일반임기제)	1명	1년	69,663천원	40시간
운 동 처 방 사	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과	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 급	1명	1년	28,688천원	35시간
통역·관광안내	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	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 급	1명	1년	28,688천원	35시간

※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책정 가능(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제35조 제3항)

※ 공무원 연금 등 연금 수급자는 반드시 연금 정지 여부 확인(공단에 문의)

○ 기타수당 :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의함

※ 직급보조비, 정액급식비, 초과근무수당, 가족수당 등

○ 복리후생 : 복지포인트 지급, 공무원연금, 건강보험 적용

※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 보험에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(단,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○ 응시자 유의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용인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,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.
-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.

- **(재공고)**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.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를 포함하며, 재공고 분야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점수의 효력이 인정됩니다.)
- 경력증명서 등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상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,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최종합격 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금회 시험에 한하여 면접응시자 본인의 면접점수(결과)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·중·하의 개수를 공개하며, 과거 치렀던 시험의 면접점수 공개는 불가합니다.
- 청구자격은 응시자 본인에 한하며, 면접시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.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6조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,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, 영리업무의 금지대상이 되지 않는 다른 직무를 종사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,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, 같은 영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또한 원칙적으로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 규정이 적용되며, 기존 영리·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.

- 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용인시에 임용되는 경우 기지급 받은 명예퇴직수당이 관련 규정에 의거 환수될 수 있으니 이점 필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6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재공고 없이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본 시험계획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**용인시 홈페이지(www.yongin.go.kr) 시험정보란에서 확인** 가능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채용절차 및 원서접수 문의	인사관리과 인재채용팀 (031-6193-2113)
관리의사 운동처방사	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(031-6193-0012)
통역·관광안내	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 (031-6193-2068)

직무 기술서

☐ 관리의사

임용예정 부서	임용예정 직급	임기
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	지방의무사무관(일반임기제)	1년
주요업무	○ 만성질환 등 1차 진료 및 상담 ○ 각종 건강진단 결과 판정 ○ 보건소 예방접종 예진 ○ 감염병 예방·관리 업무 ○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업무	
필요역량	○ 공직윤리(공정성, 청렴성), 공직의식(책임감, 사명감), 고객지향 마인드 ○ 상황인식/판단력, 기획력·팀워크 지향, 의사소통능력·조정능력 ○ 분석력, 전략적 사고력, 문제해결능력	
필요지식	○ 환자진료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 전문지식 ○ 직무 관련 법규 등	
응시자격요건	○ 다음 각 호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춘 자 1.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【필수자격】 ○ 「의료법」 제2조에 따른 의사 면허 소지자 【관련분야 경력】 ○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및 「의료법」 제3조에서 정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의사 분야 실무 경력	

직무 기술서

☐ 운동처방사

임용예정 부서	임용예정 직급	임기
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과	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	1년

주요업무	○ 통합건강증진사업(신체활동) 운영 ○ 모바일 헬스케어(운동) 상담 및 콘텐츠 제공 ○ 고혈압·당뇨 표준화사업 운동 교육 ○ 모바일 걷기 플랫폼 운영 ○ 체성분 측정 및 상담 ○ 건강증진팀 업무 지원
------	--

필요역량	○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을 위한 전문적 역량 ○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업무 기획 및 운영 ○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프로그램 제공 및 교육·홍보 추진력 ○ 기타 문서기안 작성 능력
------	---

필요지식	○ 관련 규정 및 정책에 대한 지식 • 국민건강증진법 및 지역보건법 등 ○ 사업에 대한 이해 •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관련 업무 이해
------	--

응시자격요건	○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【필수자격】 ○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 및 제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【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】 ○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및 민간(법인체 및 대학 부설 연구기관, 의료기관 포함) 등에서 신체활동, 운동처방, 보건교육 관련 분야 실무 경력
--------	--

직무 기술서

□ 통역 · 관광안내

임용예정 부서	임용예정 직급	임기
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	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	1년

주요업무	○ 관광안내소에서 용인관광 홍보 및 안내 ○ 국내·외 관광객에게 관광안내 및 통역(중국어) ○ 관광안내소 정비 및 운영 ○ 주요 관광홈페이지 홍보내역 관리 등 ○ 기타 관광홍보 및 보조 ○ 필요 시 각종 회의·행사 통역 지원 ※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「관광안내소 운영지침」에 의함 ※ 업무 특성상 주말 근무 포함(현행 : 화~토 근무, 추후 변동 가능)
------	--

필요역량	○ 관내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홍보 역량 ○ 관광안내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투철한 서비스 정신 ○ 외국어(중국어) 구사능력, 정확한 발음 등 커뮤니케이션 능력 ○ 효과적인 관광안내를 위한 정보수집 및 정보활용능력
------	---

필요지식	○ 관내 관광자원 - 주요 관광지, 교통편, 숙박시설, 음식점, 관광코스 등 ○ 외국어 - 외국인 관광객 응대를 위한 외국어 지식
------	---

응시자격요건	○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【필수자격】 ○ 2년 이내 아래의 공인 어학 점수를 한 개 이상 보유한 자 - HSK 5급 이상, FLEX 776점 이상, BCT(B) 181점 이상, BCT(B)L&R 601점 이상 - CPT 750점 이상, TOCFL 5급 이상 【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】 ○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통역(중국어) 관련 실무 경력
--------	--